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첫걸음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

- 인도네시아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

- 인도네시아 -



기술보호 환경과 법률 동향

지식재산권 분야의 제도 동향

저작권	2000년 법률 제정 → 2014년 법률 전면 개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
특허권	2000년 법률 제정 → 2016년 법률 전면 개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산업디자인권	2000년 법률 제정으로 마련된 채 현재까지 적용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상표권	2000년 법률 제정 → 2016년 법률 전면 개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집적회로 배치설계	2000년 법률 제정으로 마련된 채 현재까지 적용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2000 TENTANG DESAIN TATA LETAK SIRKUIT TERPADU」
영업비밀	2000년 법률 제정으로 마련된 채 현재까지 적용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

○ 인도네시아는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영업비밀 관련 법률이 2000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됨

- 영업비밀 보호법에서는 ① 영업비밀의 범위 ② 영업비밀권자의 권리 ③ 영업 비밀권과 라이선스의 등록 및 이전 ④ 영업비밀의 침해 ⑤ 영업비밀 분야에 대한 조사권 ⑥ 형사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법원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판단을 받은 사례도 많지 않음

○ 인도네시아의 특허, 상표, 저작권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야는 각각 2016년, 2016년, 2014년 전면 개정을 통해 각 제도의 보호를 위한 절차와 권리 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

영업비밀 보안인프라 구축

보안인프라 및 프로세스 구축

보안관리 규정 마련	• 내용이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도록 가급적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포함시킴 •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실현이 가능하도록 작성 - 영업비밀의 종류, 대상, 분류, 보안업무의 조직 및 기능, 자산의 분류와 관리, 인적자원관리, IT보안관리, 보안규정 위반 시의 조치사항 등이 포함
보안조직 구성	• 기업 내 영업비밀 등 보안 관련 이해도가 높은 경험자로 보안조직 별도 구성 • 각 부서장을 부서 보안담당 책임자로 임명 • 정보 접근 권한을 구분
보안 프로세스 점검	• 자리 이석 시 문서를 공개된 상태로 두는지 여부 • 문서 캐비닛, 출입문 등에 대한 단속 여부 • PC나 노트북의 화면보호 여부 • 이동식 저장매체의 사용 관리 등
자산관리	• 영업비밀 등이 담길 수 있는 자산의 목록을 분류 · 관리 • 자산 기밀 등급을 3~4단계로 세분하고, 접근 범위를 설정 • 협력업체 등 제3자의 기업 보안 접근 시 보안서약서(영업비밀약정서) 징구 • 자산의 공개나 외부반출 시, 그 영향을 검토하고 공개 및 외부반출 여부 기록
인적자원 관리	•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시 임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 (영업비밀약정서 등) 징구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핵심기술 인력의 퇴직 시 일정 기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또는 동종업무 수행금지 약정 체결 • 경력직 채용 시 기존 재직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사용 금지 서약서 징구
보안시스템 설정	• 중요 설비나 장치, IT 정보 데이터 집약 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 상황 관리

영업비밀 침해 사례

커피 제조 방법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례

영업비밀을 이용해서 창업한 사례

- 내용 : 커피 제조 회사에 다니면서 본인이 담당한 영업비밀과 동료 근로자로부터 입수한 영업 비밀 자료를 이용해 경쟁회사를 설립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례
- 쟁점 : 피해 회사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종결하는 과정에서 당해 근로자들로부터 보안서약서(영업비밀약정서 등)를 징구한 사실이 없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특별히 갖추고 있지 않음
- 사점 : 피해 회사의 고소를 통해 지식재산총국 공무원 수사관이 수사,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
 - CV Bintang Harapan(“피해 회사”)이라는 커피 제조 회사에서 일하던 Hi Pin(피고인)은 위 제조 회사의 공장에서 일하던 중 2009년 11월경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신규회사를 설립하고 가루형 커피 등을 제조함
 - 당시 피해 회사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종결하는 과정에서 당해 근로자들로부터 보안서약서(영업비밀약정서 등)를 징구한 사실이 없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특별히 갖추고 있지 않았음
 -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커피의 제조 방법을 담고 있는 문서, 원두커피를 볶는 기계장치, 커피를 분쇄하는 기계장치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상태에서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기존 동료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커피 제조 방법, 커피콩을 굽는 노하우, 커피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의 샘플 등 자료를 취득하고, 신설회사에 근무할 것을 종용
 - 발루 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영업비밀 침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2015년 6월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권리가 없이 영업비밀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 즉, “고의로 그리고 권한이 없이 제3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1년 6월의 징역과 함께 5백만 루피아의 벌금을 선고함



보일러 제조 방법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례

이전 직장 영업비밀을 이용해 동일제품 생산, 영업비밀 침해 인정 사례

- 내용 : 원고회사에서 영업비밀 관련 정보를 담당하던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한 사례
- 쟁점 : 이직한 근로자들이 원고회사에서 취득한 청사진과 각종 정보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
- 시사점 : 해당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영업비밀 접근을 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기밀로 유지 및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음
- PT. BASUKI PRATAMA ENGINEERING (“원고 회사”)는 1991년부터 목재 연료를 이용한 보일러 기계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목재 연료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보일러 기계 제조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함
- 원고 회사는 위 보일러 기계 제조 방법 중 일부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기도 하였으나, 제조 및 생산 방법의 대부분을 영업비밀로 유지함
- 보일러 엔진의 생산을 위한 설계, 시공 방법, 세부 사양, 부품의 수, 재료 유형 등과 같은 정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은 2003년경부터 원고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전직하고, 그 이후 경쟁 회사에서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가 제조 및 생산하던 보일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함
-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이러한 청사진과 각종 정보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원고 회사가 보일러 기계의 설계 및 생산 프로세스를 관련된 특정 근로자들에 의하여 통제되도록 하는 등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 기밀로 유지 및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



영업비밀 보호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영업비밀 정의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보호법 제1조 제1호

영업비밀(Rahasia Dagang)이란 기술 및 사업 분야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사업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영업비밀의 관리자가 비밀로 유지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한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영업비밀의 보호범위

- 산업기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이 개발되어 기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하여 보호

*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일반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기술 분야 및 사업 분야의 생산방법, 관리 방법, 판매 방법, 또는 기타 정보

- (1) 식품, 음료 등 제조 공식, 방법
- (1) 화학물질 및 식품의 관리 방법
- (1) 소비자 목록 / 거래처 명단
- (1) 채무자의 신용 정보(상환 능력 등)
- (1) 업무 계획 / 사업 계획 / 마케팅 계획
- (1) 각종 자료의 표
- (1) 제조 기술 정보(산업 기술 정보)
- (1) 디자인 방법
- (1) 정보 접근 아이디 및 비밀번호
- (1) 개인 식별 번호
- (1) 마케팅 자료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영업비밀 성립의 요건 비교

〈한국〉 부경법 제2조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보호법 제3조	
비공지성	기밀성	영업 등에 관한 기술, 정보가 오로지 특정 당사자에게만 지득되어 있거나 또는 일반에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정보가 '기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경제적 유용성	경제성	기밀성이 있는 정보가 상업적 목적의 사업 또는 활동의 영위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경제적인 이익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정보가 '경제성'이 있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밀 관리성	관리성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관련 당사자가 가치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영업비밀권자의 권리

영업 비밀권자의 권리 (영업비밀보호법 제4조)

- ①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독자적으로 이용할 권리
- ②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
- ③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또는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할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

영업비밀권의 이전 및 라이선스

영업 비밀권의 이전

-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권리 이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되어야 한다(영업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제3항).
- 영업비밀권자가 제3자에게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였더라도, 그 이전 사실을 지식재산총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권리 이전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영업비밀보호법 제5조 제4항).

라이선스

- 영업비밀권자는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실시권)를 부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영업비밀보호법 제4조).
-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권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자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자신의 영업비밀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영업비밀권자는 다른 제3자에게 또 다른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영업비밀보호법 제6조, 제7조).
- 영업비밀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 역시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되어야 하고, 만약 라이선스 계약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영업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항).
- 라이선스 계약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손해를 초래하는 내용 또는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 당해 라이선스 계약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이 거부된다(영업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영업비밀 침해 행위

-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서면계약뿐만 아니라 구두합의 형태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됨

- 고의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또는 관련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비서면의 형태를 불문하고 합의된 사항 또는 계약의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영업비밀보호법 제13조).
- 현행 인도네시아 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

영업비밀 침해 시 대응방안

민사적 대응

- 담당기관 : 지방법원(Pengadilan Negeri)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분쟁 : 상업법원(Pengadilan Niaga)
-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소송의 제기,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제기
- (비공개) 영업비밀 가치 상실을 막기 위해 원고는 판사에게 재판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판사 재량으로 비공개 결정 가능

형사적 대응

- 담당기관 : 경찰청, 지식재산총국(공무원 수사관)
※ 공무원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특별 수사권한을 부여받아 영업비밀 분야의 수사를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수사의 개시 및 수사 결과 보고, 수사 결과는 경찰 수사관을 통해 검찰에 전달(영업비밀보호법 제16조 제3항, 제4항)
- 영업비밀 침해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함 (영업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 영업비밀권자가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해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고소가 필수 (친고죄, 영업비밀보호법 제17조제2항)
- 민사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은 별개의 조치이므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경우 두 조치를 동시에 취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취할 수도 있음
- 형사적 대응 과정에서 민사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 민사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유리하므로 실무적으로는 형사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례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보다는 형사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음
- (비공개) 민사적 대응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가치 상실을 막기 위해 원고는 판사에게 재판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판사 재량으로 비공개 결정 가능

행정적 대응

- 없음

영업비밀보호법상의 공무원 수사관의 수사 권한 (영업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 한국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영업비밀보호법상의 공무원 수사관(Penyidik Pejabat Pegawai Negari Sipil)은 다음과 같은 수사에 관한 권한을 가짐(영업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 공무원 수사관의 수사 권한

- (1) 영업비밀 분야에서 형사 범죄와 관련된 고소 또는 진정에 대한 조사
- (1) 영업비밀 분야에서 범죄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한 조사
- (1) 영업비밀 분야의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정보 및 증거 요청 권한
- (1) 영업비밀 분야의 범죄와 관련된 장부, 기록 및 기타 문서의 조사
- (1) 장부, 기록 및 기타 문서가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 장소에 대한 수색
- (1) 영업비밀 분야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 위반 자료 및/또는 상품을 압수
- (1) 영업비밀 분야의 범죄행위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지원 요청



산업재산권 보호제도

인도네시아 특허법에서는 ① 특허(Paten)와 ② 단순특허(Paten Sederhana)로 구분하여, 단순특허는 한국의 실용신안과 유사

○특허권자의 의무

특허권자의 의무 (유니버스법 제107조, 개정 특허법 제20조)	
(구)특허법 제20조	특허권자로 하여금 반드시 인도네시아 내에서 당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프로세스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드시 기술 이전, 투자 또는 고용을 하도록 규정
개정 특허법 제20조	특허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 구현 형태를 구체화함 (1) 특허를 받은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특허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2) 특허를 받은 프로세스의 결과물인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3) 특허를 받은 방법, 시스템의 결과물인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특허 강제 라이선스

강제 라이선스(특허법 제82조 제1항 a호)	
라이선스 정의	• 인도네시아 특허법에서 ‘라이선스’는 한국의 실시권과 유사하다. 라이선스는 독점 및 비독점을 불문하고 특허권자가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조건으로 특허를 사용하도록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강제 라이선스	•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36개월 이내에 위 특허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의 구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가 신청자에게 사용되도록 부여되는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 ① 특허권자가 공익에 반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특허를 행사하거나, ② 여전히 보호 중인 다른 사용자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특허를 개발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강제 라이선스’가 부여

○산업재산권 침해 시 대응방안

구 분		내 용
민사적 대응	특허권	• 담당기관 : 피고의 주소지 관할 상업법원(Pengadilan Niaga)(특허법 제144조 제1항) • 특허권자는 권한없이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특허법 제143조 제1항) • (2심제)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항소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Kasasi) 제기 가능(특허법 제148조) • (잠정결정) 특허권의 침해를 입은 특허권자는 긴급 구제수단으로 상업법원에 잠정결정(Penetapan Sementara)을 신청할 수 있음 - 상업법원은 ① 특허 및 특허 관련 권리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 등의 반입 방지 ② 특허 분야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증거를 보존 및 멸실 방지 ③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잠정결정을 할 수 있음 - (담보제출) 반입 금지의 잠정결정을 하는 경우 그 상품의 합리적인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여야 함(특허법 제156조). - (손해보상) 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담보를 그 잠정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지급(특허법 제158조 제5항) • (비공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판사는 재량으로 심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특허법 제145조 제4항)

구 분		내 용
민사적 대응	상표권	• 담당기관 :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상표법 제83조 제3항) •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①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② 위법한 상표 사용과 관련된 일체 행위의 금지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음(상표법 제83조 제1항) ※ 행위금지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는데, 제도의 취지, 목적 및 달성 효과가 상표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잠정결정과 중복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법원 실무상 가처분의 인용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을 감안하면,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실익은 크지 않음 • (2심)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Kasasi) 제기 가능(상표법 제87조) • (유지신청권) 상표권자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상업법원의 판사에게 ① 적절한 권한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중지, ② 배포의 중지, ③ 거래를 중지하여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상표법 제84조 제1항) • (잠정결정) 상표권자는 충분한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상업법원에 잠정결정(Penetapan Sementara)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상업법원은 ①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거래계에 진입되는 것을 방지, ② 상표 위반과 관련된 증거 보관 ③ 상표 분야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증거를 보존 및 멸실 방지, ④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잠정결정을 할 수 있음(상표법 제94조) - (담보제출) 잠정결정을 신청한 자는 합리적인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상표법 제95조) - (손해보상) 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담보를 잠정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조치 대상자에게 지급(특허법 제97조 제5항)
	특허권	• 담당기관 : 경찰청, 지식재산총국(공무원 수사관) ※ 공무원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특별 수사권한을 부여받아 특허 및 상표 분야의 수사를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수사의 개시 및 수사 결과 보고, 수사 결과는 경찰 수사관을 통해 검찰에 전달(특허법 제159조, 상표법 제99조) • 타인의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수입, 임대, 양도 등을 하는 특허권 침해 행위자는 최대 4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함(특허법 제161조). • 단순특허(실용신안)와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는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함(특허법 제162조) • 특허 및 단순특허 침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보건·환경에 문제를 초래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함(특허법 제163조 제1항) ※ 별도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 • 특허 및 단순특허 침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3,5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함(특허법 제163조 제2항) ※ 별도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 • (친고죄)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제161조, 제162조)을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고소가 필수(특허법 제165조) • (실효성) 보다 빠른 방법으로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특허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실효적임 -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위반행위 자료 등은 향후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행정적 대응	상표권	• 담당기관 : 경찰청, 지식재산총국(공무원 수사관) • 타인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함(상표법 제100조 제1항) • 타인의 등록상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최대 4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함(상표법 제100조 제2항) • 동일한 상표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보건·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치사의 결과를 초래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함(상표법 제100조 제3항) • (친고죄) 특허의 경우와 달리,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그로 인하여 보건·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치사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고소가 필수적(상표법 제103조).
		• 없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핵심수칙

○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실시해야 한다.

기술보호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영업비밀 분류 및 취급, 종업원의 의무, 영업비밀 보관·파기, 출입자 통제 등에 관하여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 보안관리 전담인력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술보호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 전 직원 비밀유지서약서, 핵심직원은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모든 직원과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핵심개발자 및 임원과 전직금지서약서 체결해 기술을 지켜야 한다.

○ 핵심기술 인력이 퇴직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인력의 퇴직 시 영업비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서류/기술정보 반납 및 파일삭제 확인서를 받고 영업비밀 준수 의무 및 처벌규정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 중요 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업자산(기술) 중 영업비밀을 파악하고 등급(극비/비밀/대외비)을 부여하고 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 중요서류는 별도 보관하고 접근·복제·반출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중요서류는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자료를 임의로 복제와 반출할 수 없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해야 한다.

○ 중요설비·장치가 설치된 곳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발 및 제조설비 지역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카메라 및 스마트폰의 반입을 금지하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 중요한 기술은 특허나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하다.

개발한 기술을 특허등록하고, 영업비밀은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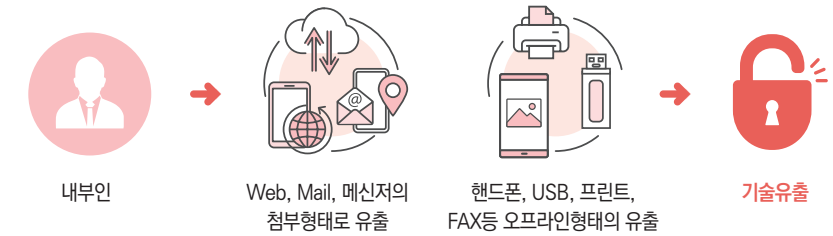
○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네트워크 인증, 데이터 암호화,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허가된 USB 사용하기, 기술지킴이(보안관제) 서비스를 활용해 기술자료를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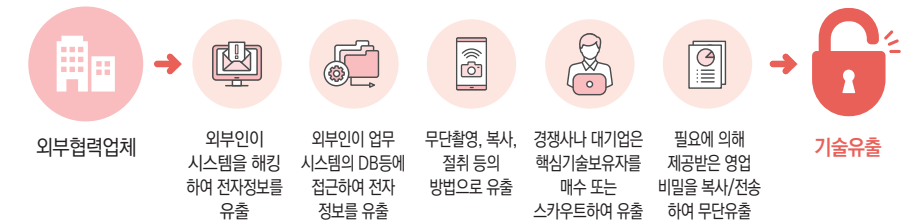
기술유출 주제 및 방법

| 기술유출 주제 |

내부인에 의한 유출



외부협력업체에 의한 유출



| 기술유출 방법 |

ON-LINE

- E-mail을 이용한 전자 문서의 전송, 웹 하드 등 P2P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공유, 메신저를 이용한 유출이 주요 이슈

OFF-LINE

- 기업의 감시망을 피해 노트북이나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법 반출하거나, 프린트나 복사물의 형태로 유출
- USB나 플래시 메모리 등 지능형 미디어를 이용한 기술유출이 증가

| 기술유출 경로 |

- 인력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산업스파이를 이용한 기술 유출
- 거래업체를 통하여 부품 및 장비를 불법적으로 유출
- 합법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핵심인력 이동

기술보호와 인력관리

중소기업에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은 조직 내부의 인력관리이며, 재직기간 중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필요

채용자 관리 (신규, 경력)

- **(신규)** 도덕성, 범죄 및 개인파산 등의 법률적 이력, 입사동기 등 신상정보를 면밀히 검토
- **(경력)** 개인의 신상정보와 더불어 이전 회사의 퇴직 동기, 이전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영업비밀을 서면 으로 제출토록 하여 동종 기업 간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

재직자 관리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

- 입사, 교육, 부서배치, 프로젝트 투입 등의 경우에 모든 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 *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는 분쟁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업무의 범위, 신분, 기밀의 범위 등 명시)

전직/경업 금지 약정

- 재직 중 얻게 된 회사의 정보(기술, 고객, 거래처 등)를 이용하여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약정
- * 핵심 기술인력 또는 임원에 한하여 체결 가능
- 통상 전직금지약정의 인정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이고 경업금지약정의 인정기간은 2~3년임

사원증 관리

- 재직자와 외부 방문객을 구분하고 출입지역에 대한 차등적 제한 필요

퇴직자 관리

- 기업무 인수인계 리스트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특약이 포함된 사직서 징구
- * 영업비밀 보유자 등 핵심인력이 퇴직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 퇴사자가 재직 시 작성한 각종 서약서나 프로젝트 투입 기록, 전자파일 등을 해당 부서 팀장 또는 중역·보안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반드시 보존

기술유출 발생시 대응 방안

유출사실 발생에 따른 보고

기술에 대한 침해 또는 유출사실을 발견한 경우, 간단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기업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기술유출에 대한 자체조사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임직원 또는 부서를 파악하고 과거업무 내역 및 핵심기술 접촉 기록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

- * 이메일, USB 등을 통한 자료반출 여부, 핵심기술에 대한 접근 및 수정 히스토리 조사 등 유출한 기술사용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해당기술의 개발 및 출시 등의 동향을 파악
- * 의심되는 회사와 관계되는 내부 임직원 또는 부서의 과거 및 현재 행적 등을 조사

추가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 실시

영업비밀 침해를 자체적 확인결과 침해가 탐지되었거나 추가 침해가 예상 되는 경우 응급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방지

- * 내부직원 등이 접근할 수 있는 중요 문서, 파일 등을 즉각 회수하여 추가 유출 방지

외부 직원 및 네트워크에 의한 기술유출일 경우에는 회사 내부접근 및 네트워크 접속 등을 차단

침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

침해 현장상황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물품은 그대로 보존하고 사진·비디오, 진술서 등을 신속히 확보 증거 신빙성을 위해 주체, 일시, 장소, 증거확보 경위 등도 포함해야 하고 진술서·확인서에는 본인 및 제3자의 서명도 필요(형사적 및 민사적 법적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기술유출 침해에 대한 조치방법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방법과 법적 구제방법이 있음